

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



창 원 시 의 회

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

의안 번호	29
----------	----

제의연월일 : 2026. 7. 16.

제 의 자 : 의 장

1. 제의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「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, 지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변경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- 실시 시기 : 2026년도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
- 실시 기간
 - － 당 초 : 2026. 9. 7.(월) ~ 9. 14.(월) 【8일간】
 - － 변 경 : 2026. 9. 16.(수) ~ 9. 23.(수) 【8일간】

3. 관련 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
- 「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(안)

2026년도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
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다음과
같이 변경한다.

- 실시시기 : 2026년도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
- 실시기간 : 2026. 9. 16.(수) ~ 9. 23.(수) 【8일간】

【관 련 법 규】

□ 지방자치법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□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제3조(감사) ① 창원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.

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, 감사위원의 편성, 감사요령,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.

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 하거나 반려한다.

⑤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.

⑥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.